

## 소 장

원 고 1. 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2. 이 ○○

경북 경산시 압량면

3. 윤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 권 ○○

부산 연제구 연산동

5. 김 ○○

6. 김 ○○

원고 5, 6 주소 인천 서구 당하동

원고 5, 6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

모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담당변호사 황민호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74-1 우서빌딩 3층

피 고 1.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대표자 사장 김중겸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9.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들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이에 따른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사용자들입니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전기요금 청구서 참조)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업법상의 '전기사업자'로 전기사용자인 원고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가진 자로서 전기사업자인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자입니다.

#### 2. 2011. 9. 15. 정전사태의 발생

가. 피고들은 2011. 9. 15.경 15:11경 사전 예고도 없이 순환단전을 실시하였고, 이에 서울 일부 지역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는 물론 울산 포항 창원 등 공단 밀집지역,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사상 초유의 돌발적인 정전 사태가 발생해 대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753만 5천여 가구가 전기가 끊긴 이번 미증유의 전력대란으로 대도시에서는 신호등이 갑자기 꺼져 교통혼잡이 빚어지는가 하면, 은행 등 금융기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나. 사무실의 냉방장치가 갑자기 멈추고,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돼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구조요청이 쇄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초가을 늦더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전력량 수요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과부하가 발생하자, 피고 한국전력공사가 전국 곳곳의 전력공급을 사전 예고 없이 차단함에 따라 발생한 일입니다.(갑 제2호증 인터넷 기사 참조)

### 3. 정전사고의 원인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갑 제3호증 정전사태 대책 참조)

#### 가. 피고들의 전력수요 예측과 공급능력의 판단의 실패

1) 피고들은 전력수요를 적절히 예측하여 이에 따른 공급능력을 판단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전기가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에 실패함에 따라 위와 같은 정전대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수요예측에 있어서 지속적인 늦더위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1. 9. 15. 최대전력수요를 6,400만kW(실제 수요는 6,726만kW)로 예측하였고, 기상청이 9. 15. 최고온도를 33℃(남부지역은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로 예보하였음에도, 최고온

도 28℃를 기준으로 한 9. 7.자 수요예측을 정전당시에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또한 초가을에 접어들자 전력 수요가 적을 것으로 보고 피고 대한민국은 정비를 위해 다수의 발전소 가동을 멈추었는바, 정전당시 원전 3기를 포함하여 총 25기 발전기가 정비 중이었고 일부 발전기는 고장이 나서(보령복합 3호기 등) 추가공급능력도 저하된 상황이었습니다.

#### 나. 기관간 상황정보 미공유 및 협조부재

1) 정전사태가 일어난 당일 소외 전력거래소는 전력수급상황과 예비전력 상황을 지식경제부에 적시에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황에 대한 피고들간의 상호협의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전부터 전력수급이 어려워졌으나 위급상황이 지식경제부에 최초로 보고된 것은 9. 15. 14:15경이며 비상조치의 판단근거인 '실제 예비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상호 공유되지 못하였습니다.

2) 피고들간의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고도 지연됨으로써 신속한 대응 지휘체계가 작동되지 않았고, 단전사실(15:11경 최초 단전)을 지식경제부 담당과장이 단전이 있고 4분 후에, 소외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15:46경, 지식경제부장관은 16:00경이 되어서야 인지하였습니다.

#### 다. 위기대응 시스템의 미작동

피고들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조치가 제대로 이

행되지 않았고, 소외 전력거래소의 경우 상황단계별로 피고들에게 통보조치하게 되어 있으나 충실히 통보되지 않았고, 연락체계도 미흡하여 단전사실을 지식경제부 여직원이 수령하기도 하였습니다.

#### **라. 대국민 홍보 지연에 따른 피해확산**

수요증가에 따른 전력수급이상이 오전부터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론사 통보는 단전시작(15:11)이후인 15:37에야 이루어져 실제 자막방송은 YTN에서 15:50에 최초로 이루어졌고, KBS 등 일반 공중파 방송은 16:54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사전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에 따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전유도를 하지 못했고 대응여유를 갖지 못해 피해를 확산하였습니다.

#### **마.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이번 정전사태는 피고들의 전력수요 예측 및 공급확보의 실패, 신속한 대응체계의 미비,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의 부실, 예비전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전달 노력의 미흡, 위기 대응의 실패, 정부차원의 대응기회 상실, 대국민 홍보조치 미흡, 보고체계의 부실 등 피고들의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에서 비롯된 사고라 할 것인바, 순환정전을 실시한 당사자인 피고 한국전력공사 및 이를 지도·감독하는 피고 대한민국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 **4.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

가. 피고들은 위 정전사태로 인해 대규모의 민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자,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위 정전사태의 원인 조사에 나섰다. 결국 관련기관의 총체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를 보상주체로 하여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갑제4호증 보도참고자료, 갑 제5호증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참조) 그러나 위 보상대책의 경우, 피해 접수기간을 2011. 9. 20.(화) ~ 10. 4.(화) 오후 6시까지로 한정함으로써, 위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원고 2. 이나영, 원고 4. 권종갑의 경우, 접수기한을 놓쳐 피해접수가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접수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도 접수 이후 현재까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 1. 임종환, 원고 3. 윤창중의 경우, 피해접수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더구나 정전으로 인한 피해 중,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고의 경우 피해보상 매뉴얼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접수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 5. 김○○, 원고 6. 김○○의 경우, 피해접수처를 내방하였으나, 보상 매뉴얼의 사고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접수를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정전으로 인해 입은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 또한 피고들의 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한 보상대책은 적법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위 정전사태의 경우, 피고들의 무사안일한 대처 및 직무태만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의해 벌어진 사고임이 명백한바, 적법성을 전제로 한 피해보상이 아닌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3. 손해배상의 범위

#### 가. 원고 1 임○○

##### 1) 손해발생의 경위

원고는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서 ‘○○농장’이란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9. 15. 오후 3시 26분경 1차 정전으로 양계장 내의 환풍기, 선풍기 등 모든 기계의 작동이 멈춰 사육하고 있던 닭들이 더위와 암모니아 가스 등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오후 4시경 전력이 공급되어 피해상황을 파악하던 중 다시 오후 5시 10분경 2차 정전이 발생하였고, 2차 정전으로 놀란 닭들은 스트레스까지 받아 한 마리씩 쓰러지며 죽어갔습니다.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통화 자체가 되지 않다가 오후 5시 29분경에서야 간신히 통화가 되었으나, ‘순환전력 공급으로 인해 돌아가면서 정전이 된다’는 안내멘트만 나왔고 20~30분 뒤 다시 전력이 공급되어 피해상황을 파악하며 죽은 닭을 치우던 중 예고도 없이 오후 6시 42분경 다시 3차 정전이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예고도 없이 발생한 정전사태로 사육하던 1,604마리의 닭이 폐사하였음은 물론 기존 닭도 스트레스를 받아 성장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조기출하하게 되어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 2) 재산상 손해(갑 제6호증의 1 내지 8 참조)

가) 폐사로 인한 손해액 : 금 3,865,026원

(폐사 수 1,604마리, 평균체중 1,468.7g, 납품단가 1,641.2원)

폐사 수 1,604마리 × 평균체중 1,468.7g = 2,355kg

2,355kg × 납품단가 1,641.2원 = 3,865,026원

나) 조기 출하로 인한 손해액 : 금 7,487,154원

정전피해 30일령 조기출하 평균체중 : 1,468g

33일령 정상출하 평균체중 : 1,673g, 편차중량 : 마리당 205g

납품단가 1,641.2원, 조기 출하 22,254마리 × 205g = 4,562kg

4,562kg × 납품단가 1,641.2원 = 7,487,154원

다) 재산손해 합계 [가) + 나)] : 금 11,352,180원

## 나. 원고 2 이○○

### 1) 손해발생의 경위

원고는 경북 경산시 압량면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식혜(전통음료)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하루 평균 4톤의 식혜를 생산) 2011. 9. 15. 16:00경부터 18:00경까지 갑작스런 정전으로 당일 발효 중이던 식혜의 작업이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발효가 정점을 지나 당일 생산한 식혜가 오염되어 모두 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시 발효탱크에 남아있던 식혜 및 일부 포장된 200ml 제품 2,000병에 대하여 포장의 역순으로 전량 폐기함과 동시에 오염된 탱크 안을 반복적으로 세척, 소독하였으며, 폐기과정상 포장용기, 뚜껑, 라벨 등 포장재를 재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전량 폐기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력손실, 거래업체에 대한 배송지연 등의 손해도 잇따르



게 되었습니다.

## 2) 재산적 손해(갑 제7호증의 1 내지 2 참조)

가) 폐기된 주재료비 손해액 : 금 917,168원

(뿔쌀, 엿기름, 백설탕, 정제수, 200ml용기, 캡, 라벨)

나) 직원 급여 지출 : 금 1,344,000원

(정직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다) 연료비 : 금 154,101원

(전력요금, 보일러요금)

라) 특허권 사용료 : 금 166,668원

마) 지급임차료 : 금 69,999원

바) 식대 : 금 80,000원

사) 폐기물처리비 : 금 3,667원

아) 3일간 기업이윤 손실금 : 금 2,500,000원

재산손해 합계 [가) ~ 아)] : 금 5,235,603원

## 다. 원고 3 윤○○

### 1) 손해발생의 경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고시원’라는 상호의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9. 15. 16:00경 갑작스런 정전으로 고시원 건물 전체의 전기가 나갔고, 고시원에 설치된 CCTV 화면도 같이 전원이 나갔습

니다. 1시간 후 다시 전기가 들어왔으나, CCTV는 전혀 작동이 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출장 온 수리기사의 소견에 의하면 ‘정전이 되면서 갑자기 전원이 차단되어 메인보드에 손상이 가서 고장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단종제품이라 더 이상의 A/S는 불가하다고 하여 결국 신제품으로 교체하였고, 그 비용으로 1,81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2) 재산상 손해(갑 제8호증의 1 내지 5 참조)

정전에 따른 메인보드 파열로 작동불가, 제품교체비용 : 금 1,815,000원

## 라. 원고 4 권○○

### 1) 손해발생의 경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골프연습장’이란 상호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 9. 15. 15:30경부터 16:00경까지,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두 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 내부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정전 이후 건물 내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도어 개폐기 센서가 작동하지 않아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A/S 신청을 하였고, 출동한 엘리베이터 기사에 따르면 갑작스런 정전으로 센서가 고장났으니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여 880,000원을 들여 부품을 교체하고 엘리베이터를 수리하였습니다.

### 2) 재산상 손해

엘리베이터 도어 개폐기 센서 고장으로 인한 부품 교체 : 금 880,000원

**마. 원고들(원고 1 내지 4)의 위자료**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재산적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이 위 재산상 손해를 입음에 있어 이에 따른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마땅히 원고들에게 위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각 금 1,000,000원을 위자료로 청구하는 바입니다.

**바. 원고 5 김○○, 원고 6 김○○**

**1) 사고 경위**

원고 김○○(여 10세), 원고 김○○(여, 8세)는 2011. 9. 15.경 원고들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당하동 당하○○아파트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중, 갑작스런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4층에서 멈추는 바람에 컴컴한 엘리베이터 안에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아이들만 갇히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4층에 있던 아파트 주민이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당일 119 출동건수가 많았는지 구급대원은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는 동안 아이들은 눈물과 땀으로 온 몸이 범벅이 되었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계속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당시의 충격으로 둘째아이 김연우는 한동안 당시의 일을 언급하면서 갑자

기 울음을 터트리는가 하면 불안증세에 말수조차 적어졌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그때의 공포심이 남아 있어서인지 엘리베이터에 점검신호가 들어오면 불안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15층 집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오곤 합니다. 아이들이 당시 당한 충격이 커서 결국 원고들 가족은 다른 아파트 1층을 분양받아 올 7월경에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 원고들이 받았을 공포와 두려움에 부모로서도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너무도 어이없는 피고들의 처사에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후 피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정전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하여 내방하였으나, 엘리베이터 사고의 경우, 보상 매뉴얼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는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볼까 했으나, 아이들에게 정신과 치료 전력이 남으면 향후 장래에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괜히 당시의 공포와 상처를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병원 치료는 하지 않았습니다.

## 2) 원고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한 원고들이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 킁킁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되면서 느꼈을 불안과 공포, 두려움 및 위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피고들이 이를 금전으로 위자해야 함은 마땅하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나이,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4. 결 론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정전사태는 전적으로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해 일어난 사고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의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부득이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2	전기요금 청구서
1. 갑 제2호증	인터넷기사
1. 갑 제3호증	정전사태 대책
1. 갑 제4호증	보도참고자료
1. 갑 제5호증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1. 갑 제6호증의 1	정전피해 신고서
2	피해 내역서
3	계량증명서
4	출하 정산서
5	사육기록부
6	닭 폐사 사진
7	사고발생 진술서
8	출하정산서
1. 갑 제7호증의 1	재산피해내역

	2	발효탱크 사진
1. 갑 제8호증의 1		피해내용
	2	정전피해 신고서
	3	기술 소견서
	4	견적서
	5	세금계산서
1. 갑 제9호증		부품(교체·수리) 요청서

###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분	1통
1. 법인등기부등본(피고)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2. 5.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담당 변호사 황 민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소 장

원 고 임○○ 외 5명

피 고 한국전력공사 외 1명

소 가 : 금 27,282,783원

인지대 : 금 127,700원

송달료 : 금 137,7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